## 4.3 조립

- (1)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할 경우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 도에 의거하여 조립 하여야한다.
- (2)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할 경우에는 연직하중, 수평하중, 콘크리트 흑압 및 풍하중, 편심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3)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를 조립 할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  - (나) 거푸집의 운반, 조립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(다) 재료, 기구,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,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- (라) 강풍, 폭우, 폭설 등의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.
  - (마)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바닥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바)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 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.
  - (사)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- (아) 보의 측판에는 슬래브의 하중이 전달되어 압축응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구조 검 토 결과에 따라 수직·수평재와 측판과 측판을 지지하는 폼타이(Form tie)를 설 치하여야한다.
- (자) 철재트러스 조립보는 측판의 벌어짐 방지를 위하여 폼타이, 브라켓, 측판연결 각 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